

## [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(주식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5년 1월 12일(월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### 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)	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③ (생략)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u>	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, 투자신탁의 합병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, 투자신탁의 존속 등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### [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4년 9월 16일</u>	<u>2015년 1월 12일</u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'14.10.01)사항 반영	<u>&lt;신설&gt;</u>	<u>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(<a href="http://www.kyoboaxa-im.co.kr">www.kyoboaxa-im.co.kr</a>) 홈페이지</u>

			<a href="#">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a>
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연혁 신설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1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확대 (채권 투자대상에 전자단기사채 추가, 환매조건부매수 신설,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)</a> <a href="#">2)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 ('14.10.01)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</a> <a href="#">3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)</a> <a href="#">4) 세부 운용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</a>
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가. 투자 대상, "②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대 상"	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 탁의 투자대상 확 대	채권 -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채권 -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<a href="#">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</a>
		집합투자증권등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a href="#">5%</a> 이하	집합투자증권등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a href="#">40% 이하</a>
	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)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a href="#">100% 이하</a></a>
제2부. 집합투자기	운용전략 문구 변	-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: <a href="#">MSCI</a>	-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: <a href="#">MSCI</a>

구에 관한 사항 중 '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',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경	<u>BRIC 10/40 Index</u> -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: <u>85% 수준</u> - 비교지수 : <u>[MSCI BRIC Index 85%] + [Call * 15%]</u>	<u>BRIC Index</u> -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: <u>90% 수준</u> - 비교지수 : <u>[MSCI BRIC Index (KRW) * 90%] + [Call *10%]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', "가. 의무해지"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	<u>&lt;신 설&gt;</u>	- <u>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', "나.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"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)	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u>	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, 투자신탁의 합병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,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4년 9월 16일</u>	<u>2015년 1월 12일</u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'14.10.01)사항 반영	<u>&lt;신 설&gt;</u>	<u>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(<a href="http://www.kyoboaxa-im.co.kr">www.kyoboaxa-im.co.kr</a>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u>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'2. 투	운용전략등 변경	-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: <u>MSCI BRIC 10/40 Index</u>	-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: <u>MSCI BRIC Index</u>

자전략 및 위험관리'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: <u>85% 수준</u></li> <li>- 비교지수 : <u>[MSCI BRIC Index 85%] + [Call * 15%]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: <u>90% 수준</u></li> <li>- 비교지수 : <u>[MSCI BRIC Index (KRW) * 90%] + [Call *10%]</u></li> </ul>
-------------	--	--	---